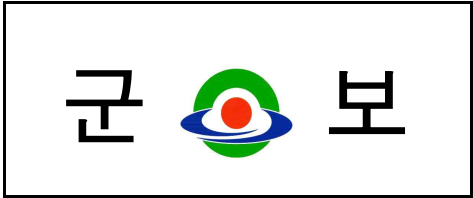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22호 2025. 6.17.(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규 칙

고 시

공 고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2025-943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예 천 군



1. 조 례 명 :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우수한 형질의 예천한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내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천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예천한우 특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특화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예천한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 및 홍보
-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
- 그 밖에 예천군수가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나. 특화센터 운영주체 지정 및 관리위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특화센터의 운영주체는 군수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위탁 위탁료와 사용허가 시 사용료의 산출 방식 및 감경 기준 규정

다. 시설물의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형태를 변경 금지 명시

라. 특화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축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kh565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축산과

3) 팩스 : 054-650-631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축산과(전화 : 054-650-81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한우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한우 특화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9-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예천한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 및 홍보
2.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
3.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운영주체) 특화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① 특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특화센터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
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변경금지) ①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자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특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특화센터 시설 설비 및 센터 지원
- 특화센터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26년 ~ 2030년으로 함.
- 본 비용추계는 특화센터를 사용허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임
- 세입 산출내역(특화센터 1층 연간 사용료)

$$: 6,000,000\text{천원(건물 가액)} \times 10/1000 \times 70/100(100분의 30 \text{ 감경})$$

$$= 42,000\text{천원}$$
 - * 1층 사용 건물 가액 60억으로 추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사용료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소계(a)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세출	○인건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일반운영비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기타보상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시설비	50,000	40,000	20,000	20,000	20,000	150,000
	소계(b)	201,000	191,000	171,000	171,000	171,000	905,000
□ 총 비용(a-b)		△159,000	△149,000	△129,000	△129,000	△129,000	△695,000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201,000	191,000	171,000	171,000	171,000	905,000
민간							
기타							
합계		201,000	191,000	171,000	171,000	171,000	905,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축산과 지방행정사무관 황원희(054-650-627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인건비 : 40,000천원

- 주차장, 공용화장실, 승강기 등 공용부분 청소 및 관리요원

2.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48,000천원

- 홍보물 제작 : 2,000천원
- 청소용품 및 비품 구입(공용) : 2,000천원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2기) : 12,000천원
- 전기안전점검 : 5,000천원
- 소방 정기 점검 및 안전 진단 용역 : 7,000천원
- 기계 설비 유지 관리 : 20,000천원

- 공공운영비 : 3,000천원

- 공용수도요금 : 2,000천원
- 전기요금 : 1,000천원

3. 기타보상금 : 유통지원금 : 60,000천원 (30만원/1두)

4. 시설비 : 센터 시설 및 기계 보강 : 50,000천원